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94호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최근 급성장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영화문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전홍표・강길순・강창석・곽은정・권순재
김수민・김원일・류성국・문순규・박강우
박해정・박현재・변보미・서명일・성보빈
이우완・장병운・전태완・정은미・지상록
진형익・차중현・하경석 의원(23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최근 급성장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영화문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화문화·영상산업 관련 행사 지원사업

3. 시민의 영화문화 향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체험·창작 지원사업

4.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 지원사업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사업) ① 시장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영화문화·영상산업 관련 행사 지원사업
<신 설>	3. 시민의 영화문화 향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체험·창작 지원사업
<신 설>	4.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화 제작 지원사업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영화문화·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조(영화문화·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 이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영화문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영화·영상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3. “영화문화”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영화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또는 수준높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기초적 작업 전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을 말한다.

제3조(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문화·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
4. 영화·영상에 대한 교육, 영화·영상물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화문화·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사업) ① 시장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영화문화·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영상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영화문화·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영화·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

2. 시를 소재(素材)로 한 영화·영상물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 기반을 둔 영화·영상물의 제작자

3. 영화·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조성하는 자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문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